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
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·건설하는 첫 사례인바,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공동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 20737호, 2025. 1. 31. 공포, 2025. 5. 1. 시행)됨에 따라, 이주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을 정하고 민·군 공항 통합건설을 위한 민항사업 위탁·공동 시행 조건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2023년 1월 12일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마련(안 제5조의2)
- 나.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항사업의 범위 및 위탁·공동 시행 절차 규정(안 제5조의3)
- 다.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(안 제11조)

라.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 시 협의근거 및 대상기관 추가(안 제15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3. 12. ~ 4. 2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결과 비대상 통
보('25. 2. 19.)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조제3항”을 “법 제7조제3항 전단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7조제3항”을 “법 제7조제3항 전단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공공임대주택의 공급)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(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라 입주자 자격 등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다.

제5조의3(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위탁·공동 시행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1. 통합신공항 부지조성사업의 설계 및 시공
2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 및 「공항시설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, 수행방법, 기간 등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관 및 그 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
2.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·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
3.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, 누락 등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

제15조제2항 중 “기획재정부장관”을 “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)	제4조(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)	제4조(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)		
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이전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법 제7조제3항 전단----- -----.	① ----- ----- ----- 법 제7조제3항 전단----- -----.		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	1. 2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제5조(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) ①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(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5조(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) ① ----- 법 제7조제3항 전단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5조(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) ① ----- 법 제7조제3항 전단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<신 설>	제5조의2(공공임대주택의 공급)	제5조의2(공공임대주택의 공급)		
	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	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		

<신 설>

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(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라 입주자 자격 등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다.

제5조의3(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위탁·공동 시행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1. 통합신공항 부지조성사업의 설계 및 시공

2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 및 「공항시설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연계하여 조성할

제11조(중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필요가 있는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, 수행방법, 기간 등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관 및 그 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중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
2.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·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
3. 중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, 누락 등에 따라 중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을 정정

제15조(지역기업의 우대) ① (생략) ②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<u>기획재정부 장관</u>과 협의를 거친 후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. ③ · ④ (생략)	<u>하는 경우</u> 제15조(지역기업의 우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</u>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	
연 락 처	(044) 201 - 5212